

# 2014년 상반기이사회 의결 결과

## 상반기 정기이사회 의결사항

- 일 시 : 2014년 3월 5일 15:00~16:30
- 장 소 : 공주의료원 회의실(3층)
- 출석임원 : 사 7인, 감사 1인
- 의결사항

의결사항	주요내용	의결결과
2013.결산(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금결산액 수 익 : 25,519,158,067원 지 출 : 22,387,151,480원 차기이월액 : 3,132,006,587원</li> <li>○ 재정상태 자산 : 30,030,484,454원 부 채 : 19,337,156,180원 자 본 : 10,693,328,274원</li> <li>○ 손익계산 수 익 : 19,607,579,000원 비 용 : 20,548,928,882원 당기순이익 : △941,349,882원</li> <li>○ 지급능력 당좌자산 : 5,022,176,553원 유동부채 : 4,406,027,840원 차기이월액 : 616,148,713원</li> </ul>	원안가결
'14제1회추경예산(안)	<p>《예산규모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014기정예산 : 28,028백만원</li> <li>○ 추가경정예산 : 28,281백만원</li> <li>○ 증 감 : 253백만원</li> </ul> <p>《증감내용》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세 입 : 28,281백만원(253백만원 증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예산 : 15백만원 감 (의료부대수익 △118, 포괄간호병동 83, 기부금 20)</li> <li>- 이월금예산 : 268백만원 증 (현금이월금 531, 의업미수금 △263)</li> </ul> </li> <li>○ 세 출 : 28,281백만원(253백만원 증)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사업예산 : 273백만원 증(관리비 44, 포괄간호병동 229)</li> <li>- 자본예산 : 100백만원 증(병원환경개선비 100)</li> <li>- 이월금예산 : 120백만원 감(매입채무 △343, 미지급금 223)</li> </ul> </li> </ul>	원안가결

의결사항	주요내용						의결결과
의료장비취득(안)	유형	장비명	수량	구매사유	추정금액	비고	원안가결
	의료장비	전자내시경등 29종	29종	신규,교체, 추가	1,250	국비 625 도비 625	
인사규정 개정(안)	현행		개정				원안가결
	제11조(인사위원회 구성) - 위원은 과장중에서 원장이 임명 제37조 (휴직) - 만6세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		제11조(인사위원회 구성) - 위원은 실·과장중에서 원장이 임명 제37조 (휴직) - 만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 *’14.1.14 시행				
회계규정 취득(안)	현행		개정				원안가결
	제92조(불납금의결손처리) ② 결손의 시효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.		제92조(불납금의결손처리) ② 결손의 시효는 민법을 준용한다.				
	제122조(고정자산의처분결정) ① 고정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	제122조(고정자산의처분결정) ① 구입가격 3억원이상 고정자산의 불용결정을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				
의료수가 관리규정 개정(안)	현행		개정(안)				원안가결
	제3조(제요금의결정) ①제2조에 규정된 제요금은 당해연도의 원가계산과 물가지수 변동율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액 등을 감안하여 그 연도의 제요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의료급여환자 및 건강보험환자의 진료수가는 정부에서 정한 진료수가 기준과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다.		제3조(제요금의결정) ①제2조에 규정된 제요금은 당해연도의 원가계산과 물가지수 변동율에 의하여 발생하는 차액 등을 감안하여 그 연도의 제요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의료급여·건강보험·자동차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 환자의 진료수가는 정부에서 정한 진료수가 기준과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다.				

의결사항	주요내용		의결결과
원무규정 개정(안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현행</b></p> <p><b>제9조(진료기록부및조산기록부 비치)</b> 진료각과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<u>진료기록부를 비치 기록하고 산부인과에서는 조산기록부를 비치한다.</u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개정</b></p> <p><b>제9조(진료기록부등 비치)</b> ①진료각과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<u>진료기록부, 조산기록부, 간호기록부를 기록 비치한다.</u></p>	원안가결
	<p><b>제10조(진료서류보존)</b> 진료에 관한 각종 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<u>의하여 5년이상을 보존하여야 하며</u> 이는 의무기록실에서 보관 관리한다.</p>	<p><b>제10조(진료서류보존)</b> 진료에 관한 각종 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<u>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며</u> 이는 의무기록실에서 보관 관리한다.</p>	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4절 법정 전염병환자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4절 법정 감염병환자</b></p>	
	<p><b>제24조 (외래환자에 대한조치)</b> 외래환자가 <u>제1종 법정전염병환자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담당의사는 지체없이 격리 입원시켜야 하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b>제24조 (외래환자에 대한조치)</b> 외래환자가 <u>법정감염병환자로 진단되었을 때에는 담당의사는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u></p>	
	<p><b>제25조 (입원환자에 대한조치)</b> 입원환자가 <u>법정전염병환자로</u> 진단되었을 때에는 전조와 같은 요령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전단의 환자가 전귀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한 창구에 7통지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25조 (입원환자에 대한조치)</b> 입원환자가 <u>법정감염병환자로</u> 진단되었을 때에는 전조와 같은 요령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전단의 환자가 전귀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한 창구에 통지하여야 한다.</p>	
	<p><b>제49조 (입원환자의진료비징수)</b> ① 입원환자의 입원비 및 수술, 주사, 처치료등의 치료비는 매일 조정하고 조정일로부터 <u>5일</u>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.</p>	<p><b>제49조(입원환자의진료비징수)</b> ① 입원환자의 입원비 및 수술, 주사, 처치료등의 치료비는 매일 퇴원시 조정하고 조정일로부터 <u>7일</u> 이내에 징수하여야 한다.</p>	

의결사항	주요내용	의결결과																								
제 규정 관리 규정 개정(안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63 331 767 409">현행</th> <th data-bbox="767 331 1171 409">개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63 409 767 651">제8조(구성) ①심의위원회는 병원장, 진료부장, 관리부장 및 <u>각과장중에서</u> 원장이 5~10인을 선임하되 노조대표1인을 포함한다.</td> <td data-bbox="767 409 1171 651">제8조(구성) ①심의위원회는 병원장, 진료부장, 관리부장 및 <u>각과·팀·실장중에서</u> 원장이 5~10인을 선임하되 노조대표1인을 포함한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현행	개정	제8조(구성) ①심의위원회는 병원장, 진료부장, 관리부장 및 <u>각과장중에서</u> 원장이 5~10인을 선임하되 노조대표1인을 포함한다.	제8조(구성) ①심의위원회는 병원장, 진료부장, 관리부장 및 <u>각과·팀·실장중에서</u> 원장이 5~10인을 선임하되 노조대표1인을 포함한다.	원안가결																				
현행	개정																									
제8조(구성) ①심의위원회는 병원장, 진료부장, 관리부장 및 <u>각과장중에서</u> 원장이 5~10인을 선임하되 노조대표1인을 포함한다.	제8조(구성) ①심의위원회는 병원장, 진료부장, 관리부장 및 <u>각과·팀·실장중에서</u> 원장이 5~10인을 선임하되 노조대표1인을 포함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
환자급식관리 규정 개정(안)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63 719 767 775">현행</th> <th data-bbox="767 719 1171 775">개정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63 775 767 1016">제16조(식기소독) ① ----- ② <u>전염병 환자의</u>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 취급하고 사용한다.</td> <td data-bbox="767 775 1171 1016">제16조(식기소독) ① ----- ② <u>감염병 환자의</u>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 취급하고 사용한다.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현행	개정	제16조(식기소독) ① ----- ② <u>전염병 환자의</u>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 취급하고 사용한다.	제16조(식기소독) ① ----- ② <u>감염병 환자의</u>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 취급하고 사용한다.	원안가결																				
현행	개정																									
제16조(식기소독) ① ----- ② <u>전염병 환자의</u>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 취급하고 사용한다.	제16조(식기소독) ① ----- ② <u>감염병 환자의</u> 식기는 일반환자의 식기와 구분 취급하고 사용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
차량관리 규정 제정(안)	<p>○ 차량관리규정 제정(안)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63 1115 491 1149">용도</th> <th data-bbox="491 1115 635 1149">규모</th> <th data-bbox="635 1115 802 1149">배정대상</th> <th data-bbox="802 1115 1171 1149">차량관리·운영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63 1149 491 1261">승용용 (공무용제반 및 업무용)</td> <td data-bbox="491 1149 635 1261">배기량 (3,000~2,000cc)</td> <td data-bbox="635 1149 802 1261">병원장</td> <td data-bbox="802 1149 1171 1261">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7년, 12만km 이상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63 1261 491 1328">승합용</td> <td data-bbox="491 1261 635 1328">소형, 대형,</td> <td data-bbox="635 1261 802 1328">공공사업, 강검진</td> <td data-bbox="802 1261 1171 1328">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8년, -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63 1328 491 1395">버스</td> <td data-bbox="491 1328 635 1395">소형, 대형</td> <td data-bbox="635 1328 802 1395">공공사업, 강검진</td> <td data-bbox="802 1328 1171 1395">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8년, -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63 1395 491 1462">특수용</td> <td data-bbox="491 1395 635 1462">검진버스</td> <td data-bbox="635 1395 802 1462">공공사업, 강검진</td> <td data-bbox="802 1395 1171 1462">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8년, -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63 1462 491 1529">특수용</td> <td data-bbox="491 1462 635 1529">구급차</td> <td data-bbox="635 1462 802 1529">환자후송</td> <td data-bbox="802 1462 1171 1529">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7년, -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용도	규모	배정대상	차량관리·운영기준	승용용 (공무용제반 및 업무용)	배기량 (3,000~2,000cc)	병원장	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7년, 12만km 이상	승합용	소형, 대형,	공공사업, 강검진	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8년, -	버스	소형, 대형	공공사업, 강검진	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8년, -	특수용	검진버스	공공사업, 강검진	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8년, -	특수용	구급차	환자후송	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7년, -	원안가결
용도	규모	배정대상	차량관리·운영기준																							
승용용 (공무용제반 및 업무용)	배기량 (3,000~2,000cc)	병원장	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7년, 12만km 이상																							
승합용	소형, 대형,	공공사업, 강검진	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8년, -																							
버스	소형, 대형	공공사업, 강검진	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8년, -																							
특수용	검진버스	공공사업, 강검진	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8년, -																							
특수용	구급차	환자후송	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7년, -																							
주민참여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(안)	<p>○ 의료원 운영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한 열린 병원을 지향하고, 지역주민의 의료이용 욕구를 의료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제정함.</p>	원안가결																								

